



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(축산부문) 요약

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확정·발표 됨에 따라 이중 축산물 생산·유통부문만을 발췌·요약하여 게재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·도, 시·군의 축산담당부서나 지역 농·축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

- 목 적 :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
- 사업비 : 77,220백만원(530,000두)
- 사업개요
 - 계약대상 :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참여 희망자
 - 2001년도 안정기준가격 : 1,000천원
 - 2001년도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: 250천원
 - 계약자 부담금 :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1만원

한우 다산장려금

- 목 적 :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한우사육기반 구축
- 사업비 : 32,300백만원
- 사업개요
 - 지급대상 :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된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
 - 지급금액 : 3-4산 200천원, 5산이상 300천원
 - 사업시행
 - 송아지 생산신고 : 안정제 가입 암소가 송아지 생산후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
 - 확인 및 지급 : 신고후 1-2개월 이내에 생산여부 확인후 지급

한우 거세장려금

- 목 적 : 한우수소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
- 사업비 : 7,811백만원
- 사업개요
 - 지원대상자 :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한우송아지를 거세 하는 자
 - 지원단가 : 거세우 두당 200천원
 - 사업시행
 - 거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한우사업에 참여 희망농가들을 조직화하여 회원으로 관리
 -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거세를 신청하고, 생산자단체는 거세일정을 수립후 거세실시

우수축생산포상금

- 목 적 : 국내산 쇠고기 품질고급화로 고급육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 제고
- 사업비 : 3,853백만원(30,700두)
- 사업개요
 - 지급대상 : 거세한우를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+, A1, B1+, B1등급판정을 받은 생산자
 - 지급장소 : 지역축협 및 농협
 - 지급기간 : 우수축생산포상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
 - 지급금액 : A1+, A1등급 150천원, B1+, B1등급 100천원

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

1.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

- 목 적 : 시장차별화를 통한 한우소비기반을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고기 판매망 구축
- 사업비 : 20,000백만원(100개소)
- 사업개요
 - 대상자 : 조합, 법인, 농가 및 기존 식육판매업자 등
 - 지원조건 : 연리 5%(생산자단체, 농가) 및 8%(일반)
- 3년거치 5년균분상환
 - 시설기준 : 점포면적 10평이상 등

2. 브랜드육 가공시설

- 목 적 : 브랜드육의 품질향상 및 냉장부분육 유통 활성화
- 사업비 : 17,400백만원(35개소 : 신규 15, 시설개선 20)
- 사업개요
 - 대상자 : 부분육가공장을 경영하면서 직판장 또는 가맹점 등을 통해 등록된 브랜드육을 판매하는 자로서
가공장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 등
 - 지원조건 : 연리 5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
3. 브랜드 가맹점 육성

- 목 적 : 브랜드육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입육과의 시장 차별화
- 사업비 : 50,000백만원(250개소)
- 사업개요
 - 대상자 : 등록브랜드 업체로서 직영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
 - 지원조건 : 연리 5%, 3년거치 5년 균분상환

4. 브랜드업체 운영자금 지원

- 목 적 : 브랜드업체 경영여건 개선으로 브랜드육의 유통활성화
- 사업비 : 8,000백만원(160개소)
- 사업개요
 - 대상자 : 2000년도 브랜드육가공시설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공장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업체
 - 지원조건 : 연리5%, 1년거치 일시상환